

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(제12조제1항제2호 관련)

1. 전문교수요원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.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1개 이상 갖추고 전문교수요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교수요원 산정에 포함한다.
 - 가.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·실무 경력이 있을 것
 - 나. 관련 분야 박사학위가 있을 것
 - 다. 가목 및 나목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실무경력이 있을 것
2. 교육시설 및 설비
 - 가. 클라우드컴퓨팅 전문교육을 실시할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
 - 나.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,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
 - 다. 24시간 교육전용으로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(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)할 것
3. 교육과정
클라우드컴퓨팅 분야의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할 것
4. 전문교육 추진 및 운영 계획
클라우드컴퓨팅 전문교육의 추진 실적 및 운영 계획이 적절할 것
5. 교육운영조직
교육운영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, 교육생 관리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4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
6. 예산
교육기관 운영예산을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